
윤리경영 실천규정

제정 2013. 8.13

개정 2014. 9.26

개정 2015. 9.25

개정 2017. 6.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의 경영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실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이라 함은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을 윤리적 판단 및 행동 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기관운영을 말한다.
2. “청렴옴부즈만”이라 함은 소비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독립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을 말한다.
3. “윤리강령”이라 함은 소비자원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 윤리강령」을 말한다.
4. “행동강령”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원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5. “임원직무청렴계약”이라 함은 소비자원의 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부원장·상임이사·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원장과 임기중 직무수행과 관련해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6. “부패행위 신고”라 함은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 또는 다른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와 임직원 이외의 자가 제보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소비자원 등에 신고하는 것 등을 말한다.
8. “부정청탁 등의 신고”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원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7.6.23>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윤리경영 실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소비자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윤리경영 추진 체계

제1절 윤리경영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원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장

2. 위원 : 부원장, 상임이사,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감사, 기획조정실장, 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2인, 청렴옴부즈만 5인 <개정 '17.6.23>

3. 간사 : 윤리경영 담당부서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사항

2. 청렴도 개선 및 부패방지 추진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 사항

3.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7.6.23>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 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윤리경영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부서별 윤리경영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청렴옴부즈만

제8조(위촉) ① 소비자원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독립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일정한 자격 이상의 외부인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촉에 대하여 원장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권한) ①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및 부패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청렴옴부즈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4.9.26>

제10조(세부규정) 원장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경영공시 등

제11조(경영공시) ① 소비자원은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공시정보의 관리와 경영공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기획재정부의 지침 및 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시정보의 관리 및 경영공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규정 제·개정 예고) ① 원장은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제규정을 제정·개정·폐지(이하 “변경”이라 한다)할 때는 변경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규정의 변경안에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고대상 규정 및 예고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윤리적 판단 및 행동 규범

제13조(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① 원장은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행동기준으로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제정이나 개정, 폐지할 때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준수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하여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 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청렴계약) ① 임원은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전항의 청렴계약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장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의 처리 등

제1절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6조(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보고) ① 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5.9.2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등으로 인하여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5.9.25>

제17조(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자신 및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5.9.25>

②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이 익명신고를 한 경우는 원장에게 보고 후 행동강령책임관의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5.9.25>

제18조(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등) ① 원장은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신고 및 협조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15.9.25>

②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소비자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세부규정)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9.25>

제2절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20조(공익신고 처리 등) ① 소비자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원에 신고되거나 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원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감사 담당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접수 및 상담·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② 원장은 소비자원으로 신고 또는 이첩되는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담당부서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익신고책임관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22조(세부규정) 공익신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부정청탁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3조(부정청탁 등의 신고 처리) ① 소비자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 관련 양식을 갖추어 신고자가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원장은 부정청탁 등의 신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감독기관,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7.6.23]

제24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원장은 감사부서를 총괄하는 직원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부정청탁 등의 신고의 상담,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본조신설 '17.6.23]

제25조(세부규정) 부정청탁 등의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7.6.23]

제5장 윤리 활동 장려 및 지원

제26조(의사결정의 윤리성) 소비자원은 주요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투명성, 청렴성, 부패방지 등 윤리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청렴활동 지원) ① 원장은 임직원의 청렴성 제고 및 부패예방 활동 등 윤리경영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승진, 징계, 포상, 파견 등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청렴성 및 반부패 활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반부패·청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자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청렴활동 우수자 우대) ① 원장은 소비자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가점을 부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개정 '15.9.25>

②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기여도, 청렴성, 사회공헌 노력 등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승진가점을 받거나 포상을 받을 자를 추천한다. <개정 '15.9.25>

③ 원장은 포상자에게 표창장 또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4.9.26]

제28조(청렴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의 청렴도 및 반부패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청렴교육계획에는 임직원이 신규 채용, 승진, 임원 임용, 보직부여 등의 시기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청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공헌 등

제29조(사회 봉사) ① 소비자원은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적극적인 사회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임직원이 최소한의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지침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나 정관 및 소비자원의 제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 8.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한국소비자원 윤리강령',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행동강령', '경영공시관리기준',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지침', '제규정 제·개정 예고제 운영지침',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시스템', '부패신고핫라인'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9.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